

# 지방공사의료원 사용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(안)

의안 번호	40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4. .  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 제2항 제6호(2000. 10.20) 개정 및 행정자치부 『2001년 공유재산관리지침(2001. 2. 16)』에 따라
-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법인에 무상 대부토록 되어 있어 위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### < 현행 >

- '83. 7. 1 도립의료원에서 충청북도 지방공사의료원으로 전환시
-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토록 규정되어 있으나, 그간 만성적인 누적적자로 인하여 설치조례(부칙 제8조, '83. 7. 1)에 출자시까지 무상사용토록 조치

## 2. 심의사항

### □ 지방공사의료원 사용 공유재산 무상사용

#### <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 >

- 위 치 :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 부지내
- 토 지 : 사직동 554-6외2필지 37,769㎡
- 건 물 : 19동 17,497.3 ㎡
- 사용기간 : 허가일로부터 출자시까지
- 회계구분 :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지방공기업회계

〈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 〉

- 위 치 :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 부지내
- 토 지 : 문화동 1654외8필지 15,383 m<sup>2</sup>
- 건 물 : 8동 9,440.27 m<sup>2</sup>
- 사용기간 : 허가일로부터 출자시까지
- 회계구분 :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지방공기업회계

**3.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(안)**

가. 무상사용 재산 총괄

〈지방공사의료원공기업특별회계〉

(단위: m<sup>2</sup>, 천원)

구 분	기 관 명	재 산 현 황			비 고
		건수	면적(m <sup>2</sup> )	금 액	
계		39	80,089.57	24,928,933	
무상사용 및 대부허가	충주의료원	22	55,263.30	18,563,489	
	토 지	3필지	37,769.00	10,453,988	
	건 물	19 동	17,497.30	8,109,501	
	충주의료원	17	24,823.27	6,365,444	
	토 지	9필지	15,383.00	3,395,391	
	건 물	8 동	9,440.27	2,970,053	

나. 무상사용 허가 재산의 목록 : 별첨과 같음

**4. 관계법령 : 별첨**

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 제2항 제6호

## 무상사용허가 공유재산의 현황

연번	종류별	재 산 의 표 시				재산가액	취득시기	소유자	비 고
		소재지	지번	구조 (지목)	면적(m <sup>2</sup> )				
계					80,089.57	24,928,933			
청 주 의 료 원					55,266.30	18,563,489			
토 지		소계	3필지		37,769.00	10,453,988			
1	토지	청주시 사직동	554-6	대지	36,876.00	10,251,528	'68.12.26	충청북도지사	신관
2	"	"	554-7	대지	732.00	157,380	'68.12.26	"	관사
3	"	"	762	답	161.00	45,080	'91. 4.11	"	영안실
건 물		소계	19동		17,497.30	8,109,501			
1	건물(A)	청주시사직동	554-6외1	철근콘크리트	2,145.51	1,008,173	'84.11.24	충청북도지사	병동
2	건물(B)	"	"	"	537.50	278,490	'91. 11. 1	"	영안실
3	건물(C)	"	"	"	362.94	148,287	'91. 11. 1	"	사원주택
4	건물(D)	"	"	조립식	148.00	47,390	'91. 11. 1	"	문상객실
5	건물(F)	"	"	철근콘크리트	10,384.00	5,572,981	'93.12. 1	"	병동및한의원
6	건물(G)	"	"	"	1,851.23	701,156	'73. 1. 1	"	숙소
7	건물(H)	"	"	"	180.00	96,090	'94.11. 1	"	식당
8	건물(K)	"	"	경량철골	158.20	30,979	'99.12.23	"	문상객실
9	건물(P)	"	"	콘테이너	36.00	7,050	'99.12.23	"	문상객실
10	건물(Q)	"	"	"	39.90	7,812	'99.12.23	"	문상객실
11	건물(I)	"	"	"	18.00	3,525	'99.12.23	"	식당창고
12	건물(J)	"	"	조적조	21.00	5,278	'99.12.23	"	화장실
13	건물(L)	"	"	경량철골	30.00	5,875	'99.12.23	"	매점및보일러실
14	건물(M)	"	"	콘테이너	18.00	3,525	'99.12.23	"	매점
15	건물(N)	"	"	조적조	18.00	4,524	'99.12.23	"	화장실
16	건물(O)	"	"	콘테이너	36.00	7,050	'99.12.23	"	문상객실창고
17	건물(R)	"	"	조적조	32.40	6,080	'99.12.23	"	작업장
18	관사	"	"	시멘기와	139.62	35,976	'80.12.26	"	관사
19	구병동	"	"	철.콘	1,341.00	139,260	'73. 1. 1	"	사무실.간호대학
총 주 의 료 원					24,823.27	6,365,444			
토 지		소계	9필지		15,383.00	3,395,391			
1	토지	충주시문화동	1654	도로	721.00	194,670	83. 7. 1	충청북도지사	도로
2	"	"	1655	대지	13,197.00	2,837,355	"	"	병동및영안실
3	"	"	1656	도로	231.00	49,665	"	"	도로

12 (제186회-기획행정위제1차부록)

번	종류별	재 산 의 표 시				재산가액	취득시기	소유자	비 고
		소재지	지번	구조 (지목)	면적(㎡)				
4	토지	충주시문화동	1657	도로	32.00	6,880	'83. 7. 1	충청북도지사	진입로
5	"	"	1675	대지	36.00	180	"	"	"
6	"	"	1675-1	도로	90.00	4,536	"	"	"
7	"	"	1676	도로	93.00	4,687	"	"	"
8	"	"	1677	대지	17.00	856	"	"	"
9	"	"	1704	대지	966.00	296,562	"	"	기숙사및사택
<b>계</b>		<b>소계</b>	<b>B동</b>		<b>9,440.27</b>	<b>2,970,053</b>			
1	건물(가동)	충주시문화동	1655	철콘및경량철골	6,452.84	1,424,598	'80. 7. 10	충청북도지사	병동(본관)
2	" (나동)	"	"	철콘및경량철골	1,296.26	607,301	'92. 8. 24	"	병동(신관)
3	" (라동)	"	"	철콘및스라브	96.10	12,850	'80. 7. 10	"	변전실
4	" (바동)	"	"	세면벽돌스라브	107.65	123,967	'93. 2. 12	"	세탁실
5	" (사동)	"	"	철근콘크리트	619.26	459,221	'00.10.28	"	장례식장
6	" (아동)	"	"	세면벽돌스라브	23.10	9,900	'00.10.28	"	발전기실
7	"	"	1704	세면벽돌스라브	230.18	8,490	'80. 9. 25	"	기숙사
8	"	"	"	철근콘크리트	614.88	323,726	'92. 9. 17	"	의사숙소

## 관 련 법 규

### < 지방재정법시행령 >

제82조 (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) 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·매각·교환·양여·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,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99.1.21>

1.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

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3조 (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) ① 잡종재산은 이를 대부·매각·교환·양여·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,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. <개정 99.1.21>

제85조 (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) ①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·수익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규정을, 당해 허가의 취소와 그 취소로 인한 손해보상에 관하여는 제94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 <개정 2000.10.20>

제88조 (잡종재산의 대부) ②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 <개정 94.9.29, 99.4.30, 2000.10.20>

6.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